##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5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임오경·임미애·서영교

윤후덕 • 한민수 • 문대림

김재원 • 박수현 • 진선미

한정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 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74조제1항제2호의2).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전한"을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생 략)	이용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		
	<u>야</u> )		
② 이용자는 <u>건전한</u> 정보사회	②올바른 정보통신서		
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비스 이용을 통하여 공정한 시		
다.	<u>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u>내용의 정보</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74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7. (생략) ② (생략) \_\_\_\_\_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를 위반하여 타인이 판매·제 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자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